

원제 등록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일	처리기간 1. 신규 원제: 12개월 2. 최초 등록 후 10년이 경과된 원제, 최초 등록 후 10년이 경과된 품목 또는 제품의 유효성분으로 사용된 원제 및 이미 등록한 자의 서류의 사용동이가 있는 원제: 3개월
------	------	-----	--

신청인	법인명(상호명)		사업자등록번호	
	주소(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)			
	대표자 성명			
	전화번호		휴대전화번호	
	전자우편 주소			
	업 종 []원제업 []수입업		영업등록번호	
취급분야 []화학농약 []천연식물보호제				

신청내역	원제명
	이화학적 성질·상태
	주요성분의 종류 및 함유량
	그 밖의 성분의 종류 및 함유량
	인화성·폭발성이 있는 원제는 그 내용
	제조장소재지

본인의 이-메일, 휴대폰 등을 이용해 신청서 처리와 관련된 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?	[]예 []아니오
--	-------------

「농약관리법」 제16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신청인

년 월 일

(서명 또는 인)

농촌진흥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이화학적 분석성적서(천연식물보호제의 경우에는 주요성분과 그 밖의 성분에 관한 분석성적서와 주요성분의 기원, 특성, 분류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) 2. 독성시험성적서 3. 그 밖의 성분의 종류와 함유량 4. 주요성분과 그 밖의 성분의 분석에 필요한 자료 5. 원제의 이화학적 분석성적서와 독성시험성적서 등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을 정리한 요약서	수수료 별표 7에 따름
------	--	---------------------

유의사항

- 기재내용이 많아 신청서에 작성이 어려울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.
- 제조장소재지 란에는 국내에서 제조하는 경우에는 국내 제조장소재지를, 외국에서 제조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국내 보관창고소재지와 제조국가 및 제조회사명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.
- 구비서류 중 독성시험성적서는 「농약관리법 시행령」 제5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등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.

처리절차

